

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
관리·운영 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관리·운영 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1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해 운영 위탁 업체를 공모로 선정하여,
- 공동세탁소 사업을 활성화하고 노동자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(1) 추진근거

-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9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
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
- 「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」 제6조~제8조

(2) 필요성

-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
- 근로자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복지증진 필요

다. 위탁사무 내용 :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관리 및 운영 전반
라. 위탁시설 개요

- (1) 위 치 : 구미시 산호대로 185 (구미시근로자권익지원센터 지하)
- (2) 사 업 비 : 300백만원(시설비 179, 운영비 121)
 - 시설비 : 179백만원(도비 54, 시비 125)
 - 운영비 : 121백만원(시비)
- (3) 규 모 : 부지 312㎡(지하 1층)
- (4) 주요시설 : 세탁기(50kg) 2대, 건조기(55kg) 3대, 스팀다리미 1대,
프레스 4대, 기타 세탁용품 등
- (5) 비 용 : 1벌당 기본 1,000원

구 분	가 격	운영손익계산
상·하벌	1,000원	세탁 최소비용이 1,000원임으로 상의, 하의 단일상품을 맡겨도 동일하게 1벌로 책정됨
동복 및 고급소재	업체별 논의	
심층오염 제거		

마. 위탁기간 : 위·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~ 2024. 12. 31.(3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 모집

3. 운영보조금 : 121백만원 (단위 : 백만원)

계	인건비	운영비	비고 (예상수익)
121	95.1	25.9	72

4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나. 기 타 : 민간위탁기관 공모 후 선정 예정

작업복 공동세탁소 관리·운영 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세탁소 설치와 민간위탁 시 운영비 지원에 따른 세출 발생
- 관계법령 :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9조
「구미시근로자권리보호및복지증진을위한조례」 제6조~제8조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세탁소 운영비

구 분		세부내역		금액(원)
직 접 노무비	인건비	급 여(팀장)	3,000,000원×1명×6개월	18,000,000
		(직 원)	2,000,000원×4명×6개월	48,000,000
		직책급 업무수당	500,000원×1명×6개월	3,000,000
		사업참여자 수당	500,000원×2명×6개월	6,000,000
		4대보험(사용자분)	전체급여×10%	6,600,000
		정액급식비	100,000원×5명×6개월	3,000,000
		명절휴가비	300,000원×5명×1회	1,500,000
		퇴직금	전체급여×10%	6,600,000
		연차수당	80,000원×5명×6개월	2,400,000
인건비 소계				95,100,000
일 반 운영비	통신비	전화,팩스,인터넷문자등	200,000원×6개월	1,200,000
		무인경비시스템	150,000원×6개월	900,000
	지 급 수수료	사무기기임대료	160,000원×6개월	960,000
		프로그램유지비	150,000원×6개월	900,000
		회계기장수수료	150,000원×6개월	900,000
	보험료	차량보험/세금	1톤탑차×1대	1,900,000
		단체보장보험	60,000원×5명×6개월	1,800,000
	일 반 수용비	세탁소모품비	250,000원×6개월	1,500,000
		장비비품수리비	500,000원×1식	500,000
		사무용품/기타	200,000원×6개월	1,200,000
		1톤탑차 유류비	300,000원×1대×6개월	1,800,000
		피복비	100,000원×5명×1회	500,000
		업무추진비	250,000원×6개월	1,500,000
		교육훈련비	200,000원×5명×1회	1,000,000
		여비교통비	20,000원×3명×12회×6개월	4,320,000
	홍보비	홍보물제작 (현수막,전단지등)	3,600,000원×1식	3,600,000
	기타	운영회의 수당	100,000원×5명×3회	1,500,000
운영비 소계				25,980,000
총 계				121,080,000

3. 비용추계의 결과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합계
구분					
세입(a)	세탁비용	72,000,000	96,000,000	120,000,000	288,000,000
세출(b)	민간위탁금 (운영비)	121,080,000	242,160,000	242,160,000	605,400,000
□ 총 비용(a-b)		△49,080,000	△146,160,000	△122,160,000	△317,400,000

4. 재원조달 방안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합계
구분					
도 비	설치비	54,000,000	-	-	54,000,000
시 비	설치비	125,000,000	-	-	125,000,000
	운영비	121,080,000	242,160,000	242,160,000	605,400,000
합 계		300,080,000	242,160,000	242,160,000	784,400,000

5. 부대의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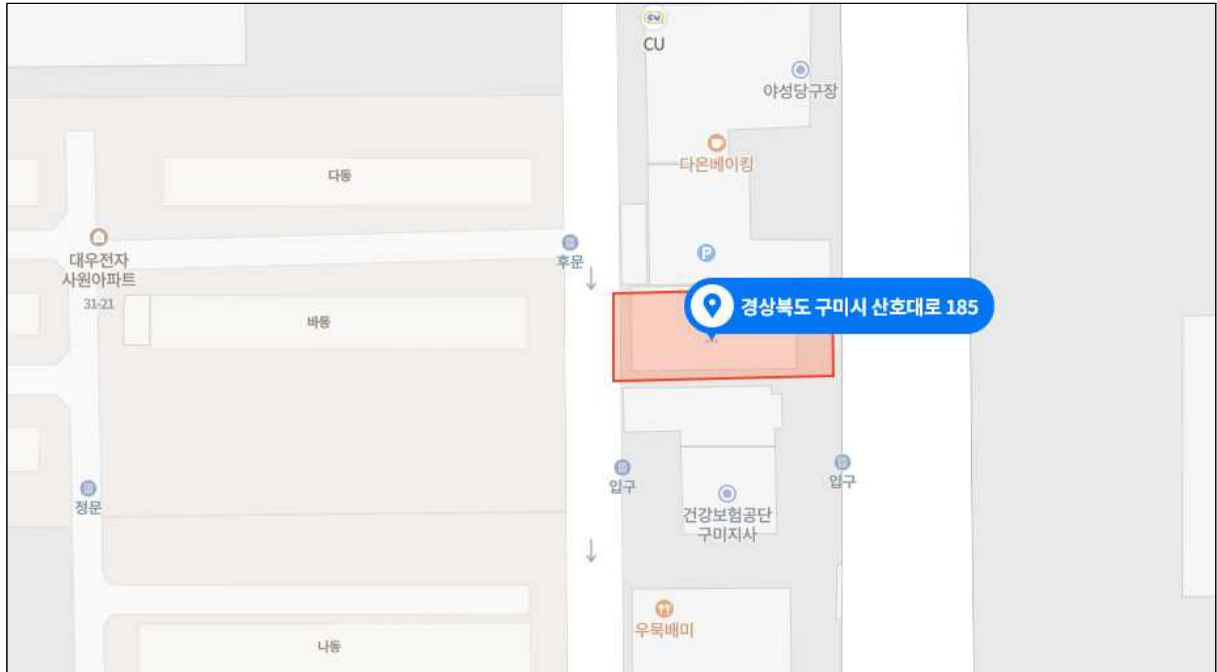
- 본 추계결과는 세탁비용 수익과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상승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.

6. 작 성 자

- 노동복지과 노사정책계 윤다경(☎6202)

사진대지

□ 위 치 도



□ 현장 사진



관계법령

□ 「근로복지기본법」

제29조(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27조 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~ ⑥ 생략

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⑧ 생략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④, ⑤ 생략

□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

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탁기관 선정방법)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
□ 「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」

제6조(사업 및 예산지원) 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

2.~7. 생략

② 제1항의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)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(이하 “근로복지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(사업주단체 포함)·노동조합(지부·분회 등 포함)·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8조(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)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사무의 종류, 범위, 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소 관 부 서		노동복지과
입 안 자	과 장	김 팔 근
	담 당	정 형 관
	담 당 자	윤 다 경 (480-6202)